

<p>변의 위치 등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편의적인 규정이라 사료되는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례로 현재 KAL빌딩 등 도로와 떨어진 건물 등은 인도 가까이 대리석 지면표지석을 세웠고, 시청본관 후문기 등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li> <li>○ 왜냐 하면 지면표시는 단순히 건물에 지면을 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건물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 건물이 바로 그 건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미시적인 목적과 시민 또는 관광객 등이 자기가 입지한 현 위치를 알고 목적인 위치는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 같은 거시적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li> <li>○ 반드시 벽면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도로와 건물간의 거리, 담장의 유무, 건물배치 형태에 따라 건물의 기둥이나 대문기둥, 담장, 벽면, 대리석의 지면표지판 별도 설치 등 건축주가 시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위치에 표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li> </ul> <p>다섯째,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중에는 금번 조례개정에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 조정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준공업지역에서는 판매시설중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으나 경제규제완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경영 활동 활성화차원에서 단서를 삭제토록 개정되었으나 미반영되었으므로 대형백화점 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는 조건하에서의 단서규정의 삭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되고</li> <li>○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중 건축조례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조례에도 명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li> </ul> <p>마지막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중</p>	<p>미반영된 사항중에는 학교이적지에 대한 건축기준 조정사항, 대지안의 조경기준 조정사항, 풍치지구적용기준 변경사항, 공개공지의 시설기준 조정사항,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질의 및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ul> </li> <li>5. 토론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ul> </li> <li>6. 소위원회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4.7, 도시정비위원장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 별첨</li> </ul> </li> <li>7. 심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안 가결(만장일치)</li> </ul> </li> <li>8. 기타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li> </ol> <hr/> <p>○議長 文一權 그러면 서울특별시都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은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서울특별시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은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hr/> <p>(參 照)</p> <p>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부지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물의 정비 및 건축시설계획을 정하되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규모는 1가구당 최대 165평방미터 이하로</li> </ol>
--	--

한다.  
제2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세입자가 입주  
를 포기하거나 입주후 퇴거 등의 사유로  
공가가 발생하였을 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한 임  
대주택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건축물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운전학원·정비학원

라.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  
지로서 구청장이 주민공람 후 구 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  
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로서 다  
음의 1에 해당 하는 것

-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 (2) 매매장(사무실에 한한다)
- (3) 폐차장(폐차영업소에 한한다)

마. 정비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기준의 2배이하인  
것

제2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건축물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다. 폐차장(구청장이 주민공람후 구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폐차영업소에 한한  
다)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정비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  
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제2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판매시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자연풍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  
정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높이는 7층 이  
하로서 높이 2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해발 70미터 이상일 경우에  
는 5층 이하로서 높이 20미터 이하로 한  
다.

- 1. 교육법에 의한 학교
-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  
기관
- 3.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안 제72조중 “건축하는 건축물은 통행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  
터 높이의 벽면에”를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높이의 벽면이나 문  
설주 등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에 대지가 속한 동명과 대표 지번을 표시  
한”으로 한다.

안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심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이 포함된  
재개발 구역지정 및 변경 고시된 구역이나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구역지정 및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하여 공람공고를 한 구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 관련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도심재개발 관련 조례

<p>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p> <p>서울특별시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건축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3항중 “법 제45조제2항(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한한다)”를 “법 제45조제2항(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규정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로 한다.</p> <p>3. 도시설계나 상세계획, 재개발계획 등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지정선과 대지안의 공지규정에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p> <p>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에너지·교통·조경·회화·조형예술”을 “교통·조경·문화·역사”로 한다.</p> <p>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7인 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9호중 “심의가”를 “자문이”로 한다.</p> <p>6.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목과 같다.</p> <p>가.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공개공지·조경·토지의 굴착계획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나. 16층 이상으로서 3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p> <p>제7조제3항본문중 “제1항”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p>	<p>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으로 한다.</p> <p>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학교이적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안의 건축물: 30퍼센트 이상</p> <p>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이 경우에는 미리 그 부분의 단면도 및 살수설비도를 제출하여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이 경우에는 그 부분의 단면도 및 살수설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제16조 규정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을 2미터 이상(인접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동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한다.</p> <p>⑨제16조제1항제5호의 학교이적지내의 조경면적의 2분의 1이상은 제63조의 공개공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제18조제1항중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4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로 한다.</p> <p>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호중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를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p>
---	---

<p>하고, 동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p> <p>12.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주차장</p> <p>나. 세차장</p> <p>다. 운전학원·정비학원</p> <p>라.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구청장이 주민공람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p> <p>(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p> <p>(2) 매매장(사무실에 한한다)</p> <p>(3) 폐차장(폐차영업소에 한한다)</p> <p>마. 정비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기준의 2배 이하인 것</p> <p>19. 식물관련시설</p> <p>제22조제2호하목중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를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호거목을 삭제한다.</p> <p>제2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1.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주차장</p> <p>나. 세차장</p> <p>다. 폐차장(구청장이 주민공람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폐차영업소에 한한다)</p> <p>라. 검사장</p> <p>마. 매매장</p> <p>바. 정비공장(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정비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p>	<p>사. 운전학원·정비학원</p> <p>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p> <p>제2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0.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6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5.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7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8조제2호중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시의 균형발전·공업기능의 보호”로 하고, 동조제3호·제6호·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3.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직업훈련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도서관에 한한다)</p> <p>10. 판매시설</p> <p>12. 공장</p> <p>제30조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제9호중 “증기”를 “건설기계”로 한다.</p> <p>제31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2.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p> <p>제32조제목중 “지역”을 “지역·지구”로 하고, 동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p>②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풍치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풍치지구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전체 대지에 대하여 풍치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풍치지구가 그 대지면적(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풍치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풍치지구에 걸친 부분에 대하여는 풍치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p> <p>③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에 해당하는 당해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p> <p>제33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5.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주차장</p> <p>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p> <p>제34조중 “경기도의 풍치지구와 연결한 풍치지구”를 “경기도와 연결한 풍치지구”로 한다.</p> <p>제35조제1항중 “경기도의 풍치지구와 연결한 풍치지구”를 “경기도와 연결한 풍치지구”로 하고, “5층 이하”를 “5층 이하로서 18미터 이하”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자연풍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서 높이 2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해발 7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5층 이하로서 높이 20미터 이하로 한다.</p> <p>1. 교육법에 의한 학교</p> <p>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p> <p>3.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p>	<p>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p> <p>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p> <p>제4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의2.운동시설(골프연습장으로서 옥외에 철타이 있는 것에 한한다)</p> <p>제42조제2항중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 차량 진입·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불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p> <p>제43조제3항제2호중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를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전기설비기준법에관한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으로”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건축의 높이제한이 지구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④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p> <p>제47조제2항을 삭제한다.</p> <p>제4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p> <p>14.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주차장</p> <p>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p> <p>제51조제2항중 “강북 4대문안의 학교이적지”를 “학교이적지”로 한다.</p> <p>제52조제2항중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강북 4대문안의 학교이적지”를 “학교이적지”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④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p>
--	--

<p>고 용적률이 30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한다.</p> <p>제58조제3항중 “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이상의 탑상형(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공동주택”으로 한다.</p> <p>제59조제2항제1호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폐율을 10분의 4 이하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을 “대지가 너비 50미터 이상인 전면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건폐율이 35퍼센트 이하이고 건축선(막다른 도로·너비 4미터 이하인 통과도로 및 도시설계 등으로 건축지정선의 지정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6미터 이상 후퇴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대지 둘레의 2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막다른 도로 및 너비 4미터 이하인 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각각 6미터 이상 후퇴하여 건축물(지표면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을 “대지가 너비 40미터 이상인 전면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이고 건축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후퇴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대지가 너비 30미터 이상인 전면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건폐율이 45퍼센트 이하이고 건축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후퇴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인 전면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건폐율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 이하.</p> <p>제5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높이제한 완화구역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 관련조례에서 법 제52조 및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60조제5호중 “너비는 20미터 이상으로 하며”를 “너비는 20미터 이상으로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로 한다.</p> <p>제6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4미터”를 “6미터”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공개공지에는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공개공지에는”으로 한다.</p> <p>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p> <p>제7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제1항의 건축상은 주거부문과 비주거부문으로 나누어서 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의 종류는 금·은·동상 및 장려상으로 하고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p> <p>제72조중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주출입구 부분 또는 대문 등 통행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지의 지번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높이의 벽면이나 문설주 등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대지가 속한 동명과 대표 지번을 표시한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크기의 지번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p> <p>제73조를 제74조로 하고,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73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등) ①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 등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별표 1 제1호 나목·차목 및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p>나.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차. 건축설비의 합리성                  카. 재해예방계획의 타당성                  다. 토지굴착계획의 적정성</p> <p>동표 제3호다목중 “(인접대지 건물현황 표기)”를 “(계획대지 주변 100미터 이내 건축물의 높이·규모·배치·벽면선 및 입면전개도 등)”으로 하고, 동호아목중 “굴토계획”을 “토지굴착계획서”로 하며, 동호자목을 삭제한다.</p> <p>동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제3호아목의 토지굴착계획서는 다음 각목과 같다.</p> <p>가. 굴착계획서(굴토공사 개요 포함)                  나. 주위시설물 현황조사서(주위 건물, 도로, 구조물 등)                  다. 지하매설물현황도(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의 매설물)                  라. 흙막이도면(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 상세도 등)                  마. 지반조사서</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의 구분지정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적용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p> <p>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신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4조(도심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이 포함된 재개발구역지정 및 변경 고시된 구역이나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구역지정 및 변경신청을 하기 위하여 공람공고를 한 구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②이 조례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 관련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도심재개발 관련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5조(학교이적지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이전한 강북 4대문안의 학교(휘문중·고등학교, 숙명여자중·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은석초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덕수중·고등학교, 배재중·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성정여자고등학교, 보인중·상업고등학교 및 동북중·고등학교)의 이적지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것으로 본다.</p> <p>38. '98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議案番號 1117)(서울特別市長 提出)</p> <p>39. '98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議案番號 1126)(서울特別市長 提出)</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의 안번호 1117 '98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의사일정 제39항 의안번호 1126 '98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p> <p>(議事棒 3打)</p> <p>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p> <p>(參 照)</p> <p>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의안번호</td> <td style="width: 35%;">1117</td> <td style="width: 50%;">1998. 4. 재무경제위원회</td> </tr> </table>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장</p> <p>나. 회부일자                  1998년 3월 12일</p> <p>다. 상정일자                  ○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1998년 3월 13일) 상정, 제안설명.</p>	의안번호	1117	1998. 4. 재무경제위원회
의안번호	1117	1998. 4. 재무경제위원회		